

글로벌무역인턴십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확인 방법

1. 인정범위

- 저소득층
 - 기초생활수급자, 최저생계비 150% 이하(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)
 - 소득 1~3분위
- 취업취약계층: 장애인, 여성가장
- 기타: 국가유공자

2.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제출 서류 및 발급처

구분	제출서류		발급(확인)처
	재학생	졸업생 및 휴학생	
● 기초생활수급자	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본인명의로 발급)		시·군·구청 읍·면·동주민센터 민원24(인터넷)
● 차상위계층 ● 장애인 ● 여성가장	- 장학금수혜증명서 (각 대학)	-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·장애수당, 자활급여,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대상자	시·군·구청 읍·면·동주민센터
		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	국민건강보험공단
● 차차상위계층	- 국가장학생증명서 (한국장학재단)	-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(서류제출일 기준 최소 12개월 이상) -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서)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	국민건강보험공단 읍·면·동주민센터
● 소득 1~3분위	- 국가장학생 증명서		한국장학재단
● 국가유공자 가족구성원	-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(본인명의로 발급)		지방보훈청

<참고>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(2017.1.1.)

-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(최저생계비 150%) 이하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2017년 최저생계비	661,172	1,125,780	1,456,366	1,786,952	2,117,538	2,448,124	2,778,710
150%	소득	991,758	1,688,670	2,184,549	2,680,428	3,176,307	4,168,065
	보험료	30,348	51,673	66,847	82,021	97,195	112,369

*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: 1인 증가시마다 330,586원씩 증가(8인가구: 3,109,296원)

* 관련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27호 2017년 최저생계비, 건강보험료=소득*0.0612(보험료율)*0.5(근로자부담)